

송해 드립니다.

-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서류를 180일 보관하게 되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(개인정보의 파기)에 따라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- 반환청구서류 : 입사지원서(이력서), 자기소개서

※ 원서 접수시 응시분야에 “**생활재활교사-대체인력**”으로 작성 바랍니다.